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2015. 11. 2.(월)
~2015. 11. 5. (목)

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계획(안)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

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계획(안)

2015. 11. 2. ~ 2015. 11. 5.

서울동부지방법원

I. 목 적

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미비점, 법령의 위배 및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착오 또는 유류 등을 시정·보완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통일된 사무처리를 기하고자 함.

II. 일반계획

- 감사일자 : 2015. 11. 2.(월) ~ 11. 5.(목)
- 감사대상기관 : 강동구청, 광진구청, 성동구청, 송파구청
- 감사반 편성 및 구성
 - 감사반 편성 : 2인으로 구성
 - 감사반 명단 : 감사관 양진섭, 감사관 이훈

III. 세부계획 - 감사반 편성 및 일정

피 감사 기관	감 사 일 자	감 사 관
광 진 구	2015. 11. 2. (월요일) 14:00~17:00	양진섭, 이훈
성 동 구	2015. 11. 3. (화요일) 14:00~17:00	양진섭, 이훈
송 파 구	2015. 11. 4. (수요일) 14:00~17:00	양진섭, 이훈
강 동 구	2015. 11. 5. (목요일) 14:00~17:00	양진섭, 이훈

※ 위 일정은 당일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

IV. 감사 착안점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, 동 시행규칙, 가족관계등록예규,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

가.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관한 사항

취임, 임면, 식별부호, 부책 등의 인계와 보고 등 각종 보고의 기간 준수 및 보고사항 이행 여부(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<이하 규칙> 제7조~14조)

나.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장부 및 부책의 비치, 관리상태

- 각종 장부 및 서류편철장의 비치여부와 기재의 적정여부(규칙 제82조, 제84조, 제85조)
-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상태 (규칙 제18조)
- 가족관계등록예규집 관리실태(가족관계등록예규<이하 예규> 제289-2호)
-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여부 (규칙 제69조)
- 보존기간이 지난 각종 장부 및 서류편철장 폐기여부 (규칙 제82조,85조)

다.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접수처리 및 기재의 적정여부

- 출생, 입양 등 각종 신고서류 접수시 수리.불수리 결정의 신속 여부 및 불수리시 처리실태(규칙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예규 제464호, 제465호)
- 출생, 입양 등 각종 신고서류의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적정 여부(규칙 제51~56조)
-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적정처리 여부(예규 제481호 제25조~27조)
- 국적취득, 귀화, 국적회복신고의 가족관계등록기재절차의 적정 여부(예규 제209호,제290호, 제421호, 제432호)



-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,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의 적정 여부(예규 제480호)
- 직권정정시 유의사항 이행 여부(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<이하 법> 제18조, 규칙 제60조, 예규 제388-2호, 제444호)

라. 등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

마. 2014년 정기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

바. 기타 가족관계등록사무전반

V. 감사결과 조치

- 감사결과 법 제120조 각호의 사항이 지적될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장자 및 그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
- 감사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피감사기관은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